

## 반려동물 유기사료 Q&A 자료

이 자료는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한 관련 종사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검토일 : 2018.10.01.)

### 1. 유기사료란?

- 유기사료는 유기농·축·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물질, 합성화합물,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·가공한 사료입니다.
-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'14.1월부터 소·돼지·닭 등 가축 유기사료 인증이 도입되었고 '17.6월부터는 반려동물(개·고양이) 유기사료 인증이 시행되었습니다.

### 2.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은?

-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  - ① 유기원료 95% 이상 사료 :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%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
  - ② 유기원료 70% 이상 사료 :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%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
- ※ 위 ①과 ② 제품에 5% 또는 30% 이내로 사용하는 비유기인 원료는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

### 3. 유기사료 인증 절차는?

- 인증 받기를 원하는 사료업체는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, 인증품 제조·가공 계획서,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\* 인증기관 목록, 신청서 서식, 인증절차 등 인증 관련 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([www.enviagro.go.kr](http://www.enviagro.go.kr))에서 조회 가능
- 인증기관(농관원 지정)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모든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기사료 인증서를 교부합니다.

### 4.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는?

-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유기원료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(유기 농·축·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비식용유기가공품)
  -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 가공식품
-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, 위 유기원료 외 다음 원료를 제품 중량의 5% 이내(유기원료 70% 이상사료는 30% 이내)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- ① 유기배합 사료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(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1)과 2))
  - ②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(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 1))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에 사용 가능한 물질
  - ③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식물성·동물성 사료 원료
- ※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물질, 합성화합물,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, 동물용의약품을 유기사료에 첨가할 수 없음

## 5. 유기사료 인증품의 표시사항은?

- 유기원료 95% 이상 제품 : 유기인증 로고(표시도형),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하며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합니다.
  - ※ 주 표시면 : 용기·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,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의미함
- 유기원료 70% 이상 제품 :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 문자표시는 가능하나,
  - 유기인증 로고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- 유기 70% 등의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그 밖에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등 인증정보(참고3 참조)와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(제조업체와 제품정보 등)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
## 6.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사료에 ‘Made with organic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?

- ‘Made with organic ○○’ 은 ‘유기 ○○으로 만든’ 과 같은 의미이므로 국내 유기사료 표시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  - \*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○○에는 사용한 유기 원료 명칭을 반드시 표시
- 다만, ‘Made with organic’ 은 미국 국가유기인증프로그램의 표시사항이므로 미국 또는 제3국 수출 시에는 해당국가의 법령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7.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는지?(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)

○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인증로고나 유기 문자표시, 이와 유사한 표시(외래어 · 외국어 포함)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\* 비 인증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(외국어 표시 포함)행위는 벌칙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 적용 대상임

○ 다만,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유기원료의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.

① 원재료의 70% 이상이 유기원료인 경우 →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원료 사용 표시 가능

② 특정 원재료로 70% 미만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 →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 사용 가능(주 표시면에는 유기 표시불가)

③ 제한적 유기표시를 한 경우 →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 원료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(%)로 표시하여야 함

\* (예시1) 사용한 원료의 명칭: 유기농 쌀(5%), 유기농 아마씨(3%), 양고기...

(예시2) 사용한 원료의 명칭: 유기농 쌀, 유기농 아마씨...유기농 원료 총함량(13%)

○ 위 제한적 유기표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· 유기사료 또는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.

- 따라서, 외국 유기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은 농·축·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적 유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## 8. 기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개고양이 사료는 언제까지 유기 표시가 가능한지?

- 인증 준비기간 등을 고려,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에 한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외국의 유기인증 표시가 가능합니다.
  - ※ 해당 인증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제품에 대한 외국 인증 표시, 일부 인증 원료를 사용하면서 최종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·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는 허용되지 않음
-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·수입된 제품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“유기”, “Organic” 등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.

## 9. 수입 유기사료 신고 절차는?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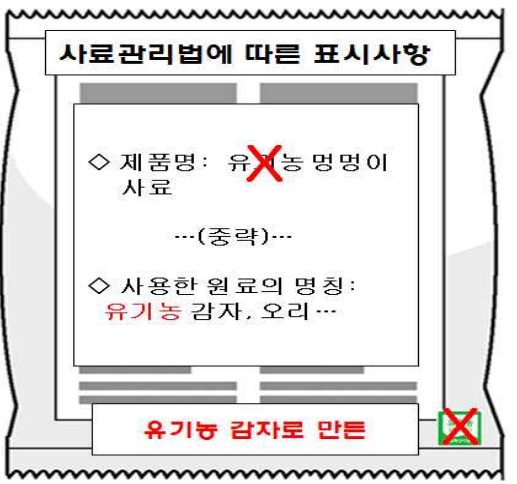
- 유기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첨부서류\*를 갖추어 착항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\* ①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, ② 거래인증서 원본, ③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(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)
  - ※ 수입신고 관할 농관원(지원 및 사무소) 연락처는 참고5를 참조
- 신고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, 착항지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 가능합니다.
  - ※ 수입자는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일반사료 수입 신고와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른 유기사료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

(참고 1) 반려동물 유기사료 표시방법 예시

1. 유기농 함량 95% 이상 유기사료

 <p>[주 표시면]</p>	 <p>[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]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품명에 유기농, 유기사료 표시 가능</li> <li>○ 인증로고 표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</li> </ul>


2. 유기농 함량 70% 이상 유기사료

 <p>[주 표시면]</p>	 <p>[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]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(유기농 00로 만든 등) 가능</li> <li>※ 제품명으로 유기농, 인증로고 표기 불가</li> <li>○ '유기 70%' 등 유기원료 함량 문구 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기농 문구 표시 가능</li> <li>○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</li> </ul>




(참고 2)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의 제한적 유기표시 예시

### 1. 유기농축산물 함량 70% 이상(비인증품)

 <p>[주 표시면]</p>	<p>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</p> <p>◇ 제품명: 유기농 명명이사료</p> <p>...(중략)...</p> <p>◇ 사용한 원료의 명칭: 유기농 감자(5%), 유기농 오리(3%), 고구마...</p> <p>유기농 감자와 오리로 만든</p> <p>[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]</p>
<p>○ 주 표시면에 유기농 관련 표시 불가능</p>	<p>○ 유기농 원료 사용 문구 표시 가능</p> <p>○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</p> <p>※ 총함량 또는 원료별 유기 함량 비율 의무표시</p>

### 2. 유기농축산물 함량 70% 미만(비인증품)

 <p>[주 표시면]</p>	<p>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</p> <p>◇ 제품명: 유기농 명명이사료</p> <p>...(중략)...</p> <p>◇ 사용한 원료의 명칭: 유기농 감자, 유기농 오리, 고구마... (유기농 원료를 8% 사용)</p> <p>유기농 감자와 오리로 만든</p> <p>[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]</p>
<p>○ 주 표시면에 유기농 관련 표시 불가능</p>	<p>○ 유기농 원료 사용 문구 표시 불가능</p> <p>○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만 유기농 표시</p> <p>※ 총함량 또는 원료별 유기 함량 비율 의무표시</p>

(참고 3) 포장재 인증정보 표시 방법

인증품의 표시사항		
 <p>①</p>	 <p>Name of certifying body : Certificate Number: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생산자 : ④</li> <li>◦ 포장장소 : ⑤</li> <li>◦ 전화번호 : ⑥</li> <li>◦ 생산지 : ⑦</li> </ul>
<p>인증기관명: ②</p> <p>인증번호: ③</p>		

① 표시 도형

- (도형 내부 문구) ‘유기농’ 글자는 ‘유기사료’ 또는 ‘비식용유기가공품’으로 표기,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, 농식품부(MAFRA)는 흰색 표시, 활자체 고딕
- (도형 작도법) 초록색이 기본 색상이며 파란색·빨간색·검은색 가능

※ 유기원료 70% 이상 인증품의 제조·가공·취급자는 유기라고 사용 불가

② 인증기관명, ③ 인증번호

-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 표시(인증기관명은 약칭 사용 가능)
-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, 생산자와 포장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

④ 생산자 :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기재

⑤ 포장장소 :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

⑥ 전화번호 :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번호

⑦ 생산지 :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표시

※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라 포장재에 표시한 항목이 인증정보 항목과 동일한 경우, 해당 내용을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인정

\*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시행규칙 별표5, 6 및 고시(세부실시요령) 별표4 참고

\*\* 표시도형 파일은 농관원 홈페이지(www.naqs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

**(참고 4) 비식용유기가공품(유기사료) 인증기관('18.10.1. 기준)**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(주)한국농식품인증원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	043-212-0934
(유)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	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051	033-732-4234
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	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30	053-326-9895
(주)오씨케이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, 1103호(방이동, 대우유토피아)	02-522-4351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	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(용봉동)	062-530-2034
(사)농산물품질평가원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(화서동) 7층 2-1호	031-298-6615
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	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(화양동)	02-450-4200
(주)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	전라북도 익산시 변영로1길 20 (목천동)	063-856-0907
건국에코씨트인증원(주)	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(단월동, 건국대학교 충주(글로벌)캠퍼스)	1599-6259
주식회사 녹색친환경	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길 3	055-356-6279
(주)컨트롤유니온코리아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908호, 909호, 910호 (성수동2가, 서울숲드림타워)	02-2281-9237
(주)비씨에스코리아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11길 20 (쌍용동)	041-562-6265
농업회사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주식회사	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31 (초산동)	054-534-7060
(주)에코리더스인증원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(도곡동, 양재SK허브프리모)B101호	02-393-3922
(사)친환경축산협회	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35 (거여동) 한동빌딩 3층	02-401-6888

※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([www.enviagro.go.kr](http://www.enviagro.go.kr))에서 조회 가능

**(참고 5)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 신고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**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경남지원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49번길 16	055-275-2813
인천사무소	인천 연수구 너말로47번길 30	032-310-3600
평택사무소	경기 평택시 비전동 630-12	031-550-4400
삼척·동해사무소	강원 삼척시 원당로 3	033-574-6060
군산사무소	전북 군산시 조촌5길 59	063-440-7300
목포·신안 사무소	전남 목포시 호남로64번길 19	061-243-6060
순천·광양사무소	전남 순천시 지현길 100	061-742-6060
부산사무소	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93	051-868-6060
울산사무소	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436	052-265-6060

※ 유기사료가 수입되는 착항지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사무소에 수입 신고

(예시 : 평택항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 사료는 농관원 평택사무소에 신고,  
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 사료는 농관원 인천사무소에 신고)

**(참고 6) 수입신고서 서식**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의4호서식]

**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**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제1쪽)

신고시기	A:본신고[ ] B:사전신고[ ]	신고번호							신고일	년	월	일
		처리기한	서류검사 3일, 정밀검사 18일									

신고인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
	상 호	업 종
	주 소	
전화번호: ( )		(FAX : ( ))

제조업자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
	상 호	업 종
	주 소	
전화번호: ( )		(FAX : ( ))

제품명	명 칭	성분등록번호	HSK번호
	한글명	신고 총중량/총금액	kg/ US\$

제품 유형	용도
-------	----

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	
--------------	--

유통기한	년 월 일(제조일)부터 년 월 일까지	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생산국(제조국)	수출국
----------	-----

제조회사명	주소
-------	----

수출회사명	주소
-------	----

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	수입항	입항일	년 월 일
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--

보관창고	(전화번호: ( ))	화물관리번호	선하증권(B/L)번호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  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인 증서 사본 2.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.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.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